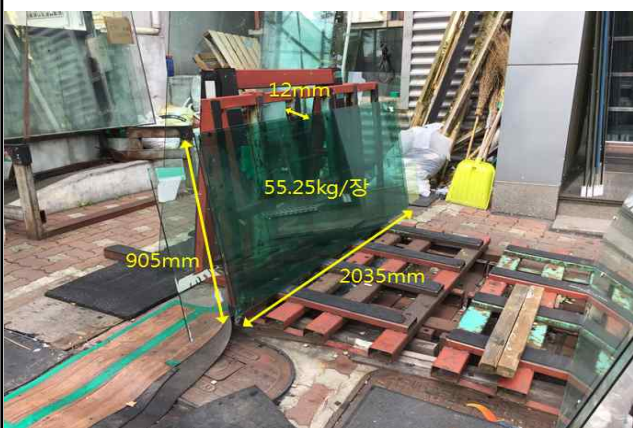


화물차량에 적재된 강화유리 하차 중 유리붕괴에 의한 충돌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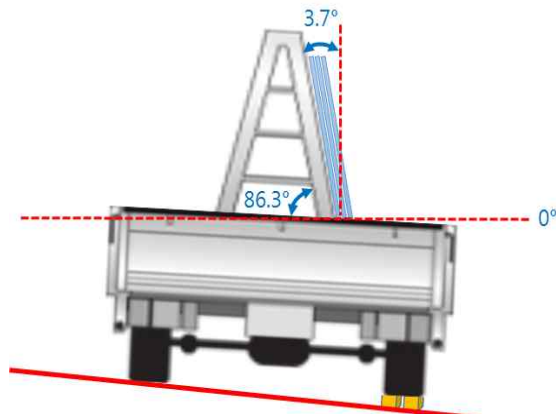
재해개요

2017년 07월 31(월) 08:00경 『서울특별시 ○○번지』 소재 『(주)○○』 앞 도로변에서 재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배달된 강화유리를 운반하기 위해 화물차량에 거치적재된 강화유리를 운반하려고 등을 돌린 자세로 유리를 업어서 운반하려는 순간, 거치대에 적재된 강화유리들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균형을 잃고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리며 재해자를 덮치기에 쓰러져 넘어지며 인도변 보도블럭에 가슴 부위가 눌리는 사망재해가 발생함.

재해관련사진



적재대에서 붕괴되며 재해자를 덮친 재해당시 강화유리들 중 일부 모습



재해당시 차량과 유리거치대가 기울어진 모습

재해발생원인

○ 중량물 취급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미작성

-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기록·보존 하고,
-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 내용은 근로자에게는 이를 반드시 알려져 숙지하게 하는 등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하였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음.

동종재해 예방대책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 유리 상/하차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이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함.